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2. 2.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70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6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규모(총괄)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995,815,910	922,849,835	72,966,075	7.91
일반회계	968,659,997	896,061,346	72,598,651	8.10
특별회계	27,155,913	26,788,489	367,424	1.37
의료급여	760,390	677,164	83,226	12.2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6,600	52,200	4,400	8.43
주 차 장	24,312,382	24,312,125	257	0.00
건축안전	2,026,541	1,747,000	279,541	16.00

나. 주요재원(총괄)

○ 일반회계 **968,659,997천원**

- 지방세수입 224,929,323천원
- 세 외 수 입 89,616,709천원
- 지방교부세 등 10,406,000천원
- 조정교부금 등 102,300,000천원
- 보 조 금 449,618,165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789,800천원

○ 특별회계 **27,155,913천원**

- 의료급여기금 760,390천원
- 빨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600천원
- 주차장 24,312,382천원
- 건축안전 2,026,541천원

4. 2025년도 명시이월(총칙 제5조)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4개 사업 16,205,711천원

5.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편성 내역

가. 세입예산: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쪽수	세부사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264,562	269,718	△5,156
221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127,589	129,680	△2,091
221	행정감사 실시(자체, 외부기관)	43,773	44,178	△405
221	구정 청렴도 향상	64,946	66,932	△1,986
222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1,780	1,780	0
222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12,440	12,140	300
223	적정한 계약원가 심사추진	4,650	4,650	0
223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	1,900	1,900	0
223	조사업무관리	1,900	1,900	0
223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	14,400	14,400	0
223	인권증진사업	14,400	14,400	0
223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 민원 관리	19,950	19,200	750
223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	11,250	10,500	750
22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3,300	3,300	0
224	감사담당관 민원실 운영	5,400	5,400	0
224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	13,758	13,514	244
224	예방기능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순찰 활동 전개	13,758	13,514	244
225	기본경비(감사담당관)	86,965	91,024	△4,059
225	기본경비	86,965	91,024	△4,059

다. 세출예산 규모

- 구 전체예산의 0.03%인 2억 6,456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예산 2억 6,971만원 대비 515만원이 감액(1.91%)됨.

라. 주요 사업 증감내역 및 검토

- p221 행정감사 실시(자체, 외부기관)는 전 부서(동),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활동 추진 및 외부기관 감사 수감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40만원 감액된 4,377만원 편성.

이는 감사담당 공무원 1명이 줄어(24명 → 23명) 96만원이 감액되고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55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임.

- p221 구정 청렴도 향상은 청렴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해 청렴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반부패·청렴관리시스템 및 평가 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198만원 감액된 6,494만원 편성.

이는 청렴모니터링콜 운영 비용 1백만원(11백만원 → 10백만원)과 부조리 신고포상금 1백만원(2백만원 → 1백만원)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p223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의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75만원 증액된 1,125만원 편성.

이는 징수과에 있던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의견진술을 위해 75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이 요인임.

마.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바. 주민참여예산 : 해당 없음.

사. 기금 : 해당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